



제11장 민사사건 처리절차

1. 개요

가.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해결해 주는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나.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동창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법률상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합니다.

다. 소송제기법원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여금 청구 등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등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방법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 소장의 기재사항

● 당사자

원고, 피고의 주소·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합니다.

● 청구원인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1999년 5월 1일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약정기일인 1999년 10월 31일이 지났는데도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필요사항

소송목적가액의 0.5~0.35% 상당(소송물 가액에 따라 결정됨)의 인지를 붙이거나 은행에 협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피고의 수만큼 소장 부분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때 법정 송달료도 함께 예납하여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의 진행

가. 소장부본의 송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

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줍니다.

나. 외국법원 소송서류의 송달문제

● 송달방법

외국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서류의 송달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외국법원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소송서류 송달을 의뢰하면 한국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한국법원에 송달촉탁을 하는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호의로써 행해지는 것이어서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에 대해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의 부속협약인 「헤이그 송달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앞으로는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간(현재까지 미사사법공조를 필요로 했던 국가 중 약 90%가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에는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서 소송서류를 수신하여 송달을 하게되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송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헤이그 송달협약」에 의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를 통하여 자유롭게 해외거주 자국민에게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2000년 1월 16일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양자간 미사사법공조조약인 한·호주 민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되어 호주와는 상호 소송서류의 송달뿐만 아니라 영상전송을 통한 증거조사 및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송달증명서 송부가 가능하며, 상대국의 사전허가를 얻어 그 나라 안에서의 증거조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 재판진행절차

● 자백과 부인

재판장이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하면 변론

기일에 출석한 워고는 먼저 “1,000만원을 뱉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인정(자백)하거나 부인하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 항변

그 외에 피고는 “돈 뱉린 사실이 있으나(자백) 그 후에 갚았다” 또는 “빚으로 상계했다”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그 항변에 대하여 워고는 자백, 부인 등의 답변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 주장 및 답변의 방법

이러한 주장, 답변 등을 워·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피고의 최초 준비서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소송상의 주장, 답변 등을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입 증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마.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정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의제자백

워·피고중 어느 한 쪽이 소환(공사송달 제외)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다만 불출석 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은 인정됩니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쌍불취하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 1개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소송절차의 종료

가. 판 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나.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을 종결됩니다. 다만 피고가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청구의 포기(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것), 인낙(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승인하는 것), 당사자간의 화해 등으로 종료되기도 합니다.

5. 상 소

가. 항 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1.5배입니다.

나. 상 고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입니다.

6. 확정과 강제집행

가. 개 요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 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1) 집행권워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집행권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 판결입니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2) 집행문 부여

위와 같은 집행권워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입니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워을 가지고 제1심 법원이나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 줍니다.

(3) 강제집행 절차

● 집행관에의 위임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 압류

동산압류의 경우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하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금전채권의 경우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고(이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가능), 전부명령을 받아 금전채권 자체를 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경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하여야 합니다. 압류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철회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기일에는 채권자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기일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배당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지급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지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에 배당신청을 해온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단,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배당에 있어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는 절차가 없고, 바로 법원이 배당을 합니다.

다.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 채권자의 신청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의무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은 때에는 다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행시의 조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법원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 외국법원 판결의 국내집행

● 원 칙

외국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 집행할 경우 예전대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하려면 국내법원에서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한 집행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요 건

국내법원에서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① 한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패소한 피고가 한국인인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혹은 송달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하여 응소하였어야 하며, ③ 외국법원의 판결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 타

이러한 요건이 모두 구비된 판결중 한국법원이 그 적법함을 집행판결로 선고한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당해 외국판결이 반드시 확정된 판결이어야 함은 국내법인 판결의 강제집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나,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의 재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소송 관련 제도

가. 소액심판제도

(1)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경

우가 많았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소액심판 제도입니다.

(2)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이 서식용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직원에게 대신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베를기일이 정해지고, 그 날짜와 장소 등을 통보받게 됩니다. 재판은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베를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칩니다. 즉,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년 9월 1일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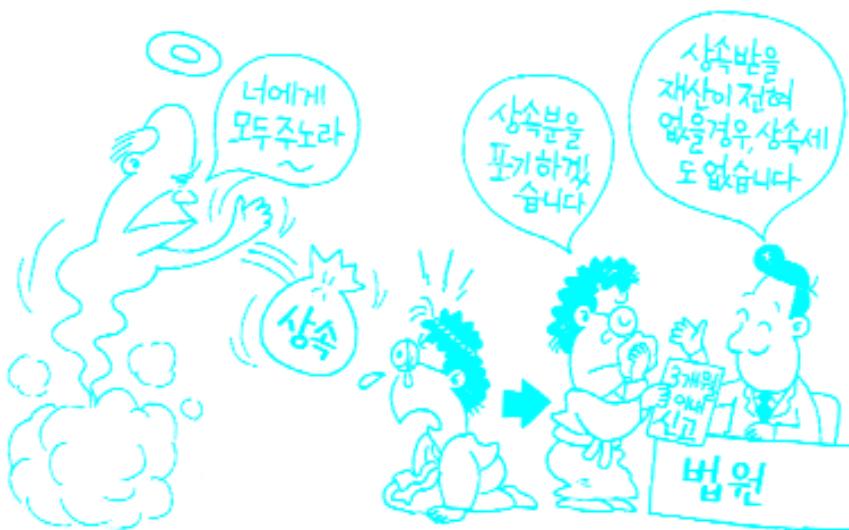
(4) 소송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민사조정제도

(1) 제도의 개념 및 취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조정신청

● 민사조정의 시작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관할법원

조정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조정신청방법

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신청은 법원직원에게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시 유의할 점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인원수만큼의 신청서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수수료와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3) 민사조정절차

●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합니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 조정기일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일시·장소가 통지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당일이 조정기일이 됩니다.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대리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고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고루 듣고 당사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구하고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4)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 조정의 성립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더라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정본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조정의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에도 적절치 못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5)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고, 한편 소송으로 이행됨에 따라 추가로 이자를 붙여야 하지만 이때에도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였다며 소장에 붙였어야 할 금액에서 조정신청을 할 때

이미 납부한 수수료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불이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조정의 효력과 집행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위 조정 또는 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의 내용이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거나 일정한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장 법률구조제도

1. 법률구조제도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됩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 공익법무관이란

사법연수원 수료자(변호사 자격취득자)중 병역미필자를 군복무에 갈음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하여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업무 등 공공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함.

2.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그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양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3개의 지부 그리고 42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3. 공단의 법률서비스

공단의 법률구조업무는 법률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상담한 결과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가사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화해·조정이나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를 하여 주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하여 줍니다.

가. 법률상담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상담하거나 전화, 서신, 컴퓨터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단 서울지부에서는 일요일 및 야간에도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부와 출장소에서는 공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출장상담·차량이동 법률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면접상담

- 공단 각 사무실에서 직접상담
- 평 일: 오전 9시~오후 6시(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야 간: 오후 6시~오후 8시(동절기: 오후 5시~오후 7시)
※ 일요일과 야간상담은 본부에서만 실시

(2)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또는 지부·출장소의 상담전화
※ 법률상담 신청인의 과다로 전화상담 연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사무실에서 면접상담 요망

(3)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정보제공 및 사이버 법률상담

- 법률정보자료실
 - 법률상담사례: 생활에서 빈발하는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담사례화
 - 법률서식: 소장양식 및 법률서식 등을 다운받아 바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함
 - 총 5,300여건의 법률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화 함
- 법률상담: <http://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4) ARS를 통한 법률정보제공

- ARS: 전국 어디서나 국비없이 『132번』
- FAX: (02) 596-1321

나. 법률구조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서 구조대상사건과 구조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민사·가사사건

공단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가사 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대상자

- 농·어민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 보호대상자 등)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사
-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등

●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

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 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 또는 법률구조위원회로 위촉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공단에서 구조기각 결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자가 이에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된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 소송비용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습니다. 이렇게 상환받은 비용은 다른 부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에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즉,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아래의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공단이 농·수·축협, 조흥은행,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각각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각 농민, 어민, 축산인, 도시영세민, 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 등에게 무료로 법률구조혜택을 주는 사업임.

| 출연기관 | 수혜자 | 사업개시일 |
|----------|--|------------|
| 농·수·축협 | 농민, 어민, 축산인 단, 승소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96. 7. 1 |
| 조흥은행 |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단, 승소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97. 10. 1 |
| 한국담배인삼공사 | 구조대상자인 담배소매인 단, 승소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99. 2. 1 |

(2) 형사사건

공단에서는 민사·가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 대상자

- 농·어민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 보호대상자 등)
-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사건처리절차

구조신청은 공단 본부 또는 지부 및 출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되고, 공단에서는 구조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구조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일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합니다.

(3)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

행정소송사건 및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농·어민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영세상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

보장수급자, 소녀·소녀가장, 장애인, 모·부자가정 등)

-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담배소매인)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헌법소원사건에 한함) 등

●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고, 사건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은 민사사건과 동일합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ARS·FAX 법률정보」 이용방법

● ARS 이용방법

① 먼저 다음의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국번없이 「132」를 누름

③ 전화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전화기의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정보에 연결됨.

● FAX 이용방법(FAX겸용전화기만 이용가능)

① 먼저 다음의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FAX겸용전화기로 「(02) 596-1321」을 누름

③ 전화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를 모르는 경우에는 팩스전화 연결 후 전화기의 별표(*)를 누르면 사례코드번호 목록을 팩스로 받아볼 수 있음.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9년에 창설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번지(전화:02-780-5688)에 본부가 있으며 전국에 29개 지부와 미국에 6개의 해외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1988년 7월 2일 법무부에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한 가정문제 전문기관으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해외지부 연락처는 다음의 표와 같은바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각종 법률문제나 가정문제에 관하여 아래지부에서 무료로 상담을 하고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상담안내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여성백인회관

(Tel. 780-5688, 5689 / FAX. 780-0485)

◇ 상담시간

평 일: 오전 10시~오후 4시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7시

◇ 인터넷 상담

<http://www.lawhome.or.kr>-상담소 홈페이지

◇ e-mail

webmaster@lawhome.or.kr

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해외지부

| 기관명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한인가정상담소 |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 3938 Wilshire Boulevard #200 LA, CA 90010, USA | 213-389-6755 |
| 오렌지카운티 가정법률상담소 | Korean Family Counseling and Legal Advice Center | 11501 Brookhurst St., Suite 201 Garden Grove, CA 92840, USA | 714-590-0017 |
| 워싱턴 가정법률상담소 | Korean Family Counseling and Research Center | 1952 Gallows Rd., #340A Vienna, VA 22182, USA | 703-761-2225 |
| 한인생활상담소 | Korean Community Counseling Center | 332 N. 75th St. Seattle, WA 98103, USA | 206-784-5691 |
| 필라델피아여성회 가정법률상담소 | Korean Women's Association of Greater Philadelphia | 1135 W. Cheltenham Ave., Suite 203 Melrose Park, PA 19027, USA | 215-635-5158 |
| 뉴저지 한인가정상담소 | Korean Family Service Center (YWCA of NJ) | 110 Main St. Fort Lee, NJ 07024 USA | 201-461-7313 |



제13장 공증제도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내용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다행할 수도 있습니다.

2. 공증기관

국내에서의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 사무실 등에서 담당하며,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합니다.

3. 공증의 필요성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 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깁니다.

● 신속한 강제집행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증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서류의 필요 요건

예컨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병역면제처분을 받기 위하여 병무청에 제출하는 영주권취득사실확인서는 해당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정한 서류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

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은 이와 같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나, 상속인들 사이의 유산분배에 관하여 유언을 할 경우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매우 편리하고 이를 이용하면 유언자의 사망후에 있을 수 있는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보이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 확인

이것은 재외공관의 공증에서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문자 그대로 일정한 사실을 영사가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여 영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또는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관하여 그 문서상의 서명이나 날인된 입장이 진실하다는 것과 그 작성자의 직위를 확인해 주고, 사문서에 대하여는 그 문서가 영사관할구역 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에 그칩니다. 특히 사문서에 대한 영사확인은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7가지 종류의 문서에 한정됩니다.

5. 공증시준비사항

● 신분증

공증을 촉탁하려 가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인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증인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하고, 이때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등을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범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